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성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495

발의연월일: 2022. 1. 21.

발 의 자:이성만・송옥주・정일영

유동수 · 신동근 · 홍영표

윤관석 · 허종식 · 오영환

김교흥 • 박찬대 • 이동주

송영길 · 맹성규 의원

(14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제4항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'그 밖의 재난'이 뜻하는 바가 불명확하여 이를 해석하고 적 용하는데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그 범위와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재난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4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제4항제1호 중 "그 밖의 재난"을 "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사용·수익허가기간) ① ~	제21조(사용·수익허가기간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・	4
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
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	
있다.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	<u>.</u>
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	
용·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	
로 한다.	
1. 천재지변이나 <u>그 밖의 재난</u>	1 <u></u> 「재난 및 안
으로 피해를 본 경우	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
	의 재난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